의안번호	2208520
의 뢰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4.
추계번호	25E117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년 412억원, 2029년 3억원 등 3년간 총 831억원(연평균 27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87조제2항)	−412	−412		−825	−412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87조제3항)		−3	−3	−6	−3
계	−412	−415	−3	−831	−277

주: 1. 각 항목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연도를 대상으로 계산한 수치임
2.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세수효과는 가입의무기간(2년)을 고려하여 납입 후 2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7조제2항 (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2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2	안 제87조제3항 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)	○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 2년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7조제2항 (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)	○	
2	안 제87조제3항 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징수기준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발생

○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수효과는 다음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발생한다고 가정

○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최소 유지기간(2년)을 감안하여, 납입 후 2년 후에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

❑ (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) 최근 조세지출 실적과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향후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1~2024년 조세지출액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되,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인상 효과를 반영함

–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, 해당 효과*를 세수효과에 반영

* 제16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종전 한도(240만원) 이상으로 저축한 가구는 한도(300만원)까지 납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한 결과, 납입액 한도 인상(240→300만원)에 따라 세수효과가 약 5.6%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
❑ 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) 2024년 조세지출 전망치가 향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세수효과 추계

○ 청년우대형주택청약주택종합저축의 감면실적은 2023년 2억원, 2024년 (잠정치) 3억원 수준으로, 2024년 실적 수준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❑ 2025년부터 동 소득공제·비과세 대상이 무주택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으나, 해당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동 추계에서는 해당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87조제2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동 특례는 무주택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%(한도 300만원)를 소득공제

○ 대상자: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

○ 특례내용: 저축납입액(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)의 40% 소득공제

○ 현행 적용기한: 2025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2022년 414억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396억원으로 감소한 후, 2024년에는 40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불규칙한 흐름이 나타남

[표 2]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p	'21~'24년 연평균
감면실적	295	357	414	396	401	392

주: p는 잠정치임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(2) 추계 방법

❑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1~2024년 감면실적 평균액이 향후에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되,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

○ 과거 실적이 불규칙한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최근 평균치를 활용

○ 2024년부터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수효과가 5.6%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반영

(3) 추계 결과

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년 412억원, 2028년 412억원 등 2년간 총 825억원(연평균 41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누적	연평균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87조제2항)	−412	−412	−825	−412

나.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87조제3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동 특례는 무주택 세대주 등 청년이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

○ 대상자: 총급여 3천 6백만원(종합소득금액 2천 6백만원)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

– 단, 직전 3개 연도 내 한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*인 경우는 제외

* 이자·배당소득 2,000만원 초과자

○ 특례내용: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
(비과세 한도액 500만원, 인정 납액금액 한도 연 600만원)
- 단,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함

○ 현행 적용기한: 2025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최근 조세지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2022년까지 실적은 1억원 미만이었으나, 2023년 2억원, 2024년 3억원으로 증가함
- 동 특례는 최소 2년간의 가입유지 요건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가 신설된 2018년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낮은 실적을 나타냄

[표 4]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조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p
감면실적	0.1	0.2	0.5	2	3

주: p는 잠정치임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연도

(2) 추계 방법

❑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4년 잠정치 실적(3억원)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○ 향후 이자소득 비과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최근 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함

(3) 추계결과

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3억원, 2029년 3억원 등 2년간 총 6억원(연평균 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누적	연평균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87조제3항)	-3	-3	-6	-3

주: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세수효과는 가입의무기간(2년)을 고려하여 납입 후 2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